

1992年度會計 歲入・歲出決算承認(案)

提出日字: 1993. 11. 24

提出者: 沙下區廳長

의안번호

206

1. 提 案 理 由

地方自治法 제125조 및 地方財政法 施行令 제38조의 規定에 의거 前年度 歲入・歲出 決算에 대하여 議會의 承認을 얻고자 함.

2. 主 要 內 容

가. 歲入 決算 總括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징 수 결 정 액	수 납 액	미 수 납 액
합 계		50,244	65,102	62,198	2,904
일 반 회 계		48,921	63,695	60,885	2,810
과 목	지 방 세	9,779	10,835	10,436	400
	세 외 수 입	11,857	25,700	23,289	2,410
	조 정 교 부 금	12,412	12,414	12,414	0
	보 조 금	14,873	14,746	14,746	0
특 별 회 계		1,323	1,406	1,313	94
과 목	의 료 보 호 기 금	1,058	1,121	1,051	70
	영 세 민 생 활 안 정	156	178	162	16
	새 마 을 소 득	109	107	100	8

나. 歲出 決算 總括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 후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의년도 이월액	불용액
합 계		50,243	10,948	60,741	46,585	8,698	5,458
일반회계		48,920	10,498	59,418	45,334	8,698	5,386
과목	의회비	409	0	409	385	0	24
	일반행정비	12,658	541	13,199	11,107	1,187	905
	사회복지비	10,077	313	10,390	9,423	509	458
	산업경제비	1,498	193	1,691	1,626	0	65
	지역개발비	22,367	9,759	32,126	21,552	6,934	3,640
	문화및체육비	392	0	392	284	68	40
	민방위비	639	0	639	599	0	40
	지원및기타경비	880	△308	572	358	0	214
특별회계		1,323	0	1,323	1,251	0	72
과목	의료보호기금	1,058	0	1,058	1,042	0	16
	영세민생활 안정기금	156	0	156	144	0	12
	새마을소득	109	0	109	65	0	44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4. 덧붙임 : '92세입·세출 결산서 및 결산 감사 의견서

檢 查 意 見 書

釜山直轄市 沙下區廳長 貴下

本人 등은 地方自治法 第125條 第1項의 規定에 따라 釜山直轄市 沙下區廳의 1992年度 自治區 歲入·歲出豫算書와 同 附屬書類, 會計帳簿 및 關聯 證憑書類를 檢査하였습니다.

이 檢査를 實施함에 있어서 本人 등은 地方自治法 施行令 第47條에 열거된 事項을 檢査範圍로 하여 自治區議會의 決算檢査 등 着眼事項(1993年 6月 15日)과 會計監査基準을 遵守하였습니다.

本人 등의 檢査 結果 指摘된 內容은 다음과 같습니다.

歲 入 分 野

I. 財政充當을 위한 滯納額 一掃

○ 未收納額의 發生過多

未收納額이 91年度에 1,098,490千원 發生한데 이어 올해에도 873,636千원 發生함으로 인해 財政損失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強制徵收節次 履行 등으로 고질적 滯納一掃에 더 많은 努力이 必要합니다.

II. 未收納額의 特別管理

- 未收納 總額이 2,705,352千원으로 豫算總額의 5%를 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未收納을 줄일 수 있는 方案研究가 要望됩니다.

특히 稅外收入 中 過怠料는 徵收決定額의 50%가 未收納되는 점을 勘案하여 特別한 對策을 講究할 必要가 있습니다.

III. 押留財産의 早期整理

- 債權確保 手段으로 滯納者의 財産을 押留한 總 金額이 1,048,603千원으로 未收納 總額의 39%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早期에 徵收하도록 行政的 努力이 必要합니다.

歲 出 分 野

I. 自治區 豫算 中 地域開發費의 不用額 過多 發生

- 1991年 自治區歲入·歲出 決算檢査 結果 一般會計 不用額이 過多하게 發生되어 指摘된 바, 92年度에도 追更豫算 編成時에 豫算을 반납하는 等の 努力을 傾注하였으나, 地域開發費에서만 前年對備 2,041百萬원이 增加된, 3,640百萬원의 不用額이 發生되어 一般會計 不用額이 前年對備 2,235百萬원이 增加 되었습니다.

II. 豫算過多 策定으로 인한 豫算死藏

- 廣域 및 區 自治團體長 選舉推進情報費 등 選舉關聯費用 135百萬원과 都市計劃測量用役費 43百萬원은 豫算額을 過多하게 策定하거나 不要不急한 部門의 豫算을 削減하지 않음으로 結果의으로 豫算死藏을 招來하였습니다.

III. 豫算統制機能의 未治

- 章, 款, 項, 細項(세세항), 目別(單位事業別)로 編成된 豫算을 執行時 執行部署 推算簿의 推算機能 未治 및 財務課의 支出 原因行爲簿에 의한 豫算執行統制機能이 未治하여 道路 橋梁管理 主要事業費 施設費 中 道路 굴착지 復舊工事費 豫算現額이 650百萬원이나 支出 原因行爲額은 754百萬원으로 單位事業費가 104百萬원 超過執行 되었습니다.

IV. 새마을所得事業特別會計 運用機能 未治

- 自治區內 새마을所得事業特別會計는 1992年度 豫算이 109百萬원에 不過함에도 1992年度 支出總額이 65百萬원으로 44百萬원의 不用額이 發生하였는 바, 이는 特別會計의 원래 運用 目的에 부응하지 못한 豫算執行이었습니다.
- 위에서 指摘한 事項을 除外하고는 釜山直轄市 沙下區의 1992年 財政運營은 收支均衡이 취해진 堅實하고 計劃的이며 장기적 觀點에서 彈力的인 財政構造를 確保하기 위해 充分한 勞力이 傾注되었으며 積極的인 財政運營이었다고 認定합니다.